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수산물자조금 부문 분법 등 재정비〉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209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 성 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농산자조금법안 제정 추진에 따라 수산자조금 부문 분법 등 재정비	3
IV. 입법의 재정영향	41
[참고자료]	4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9.

3. 회 부 일 : 2026. 4.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가의 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국고 매칭을 지원하고, 자조금단체는 해당 재원으로 수급관리·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수급조절보다는 소비촉진·홍보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자조금단체는 인력 및 자본력의 부족으로 수급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점에 따라서 수급조절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법적 정당성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을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수산자조금에 관한 규정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Ⅲ. 검토의견

1. 농산자조금법안 제정 추진에 따라 수산자조금 부문 분법 등 재정비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현행법에서 농산자조금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¹⁾을 추진함에 따라 현행법을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수산자조금에 관한 규정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u>	<u>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u>농수산자조금</u> 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u>농수산업자</u>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u>농어업</u>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수산자조금</u> 의----- ----- <u>수산업자</u> ----- ----- <u>어업</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u>농수산물</u> ”이란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 <u>수산업·어</u>	1. - <u>수산물</u> -----「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 -----

1)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201호,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026.4.9.) 등 다수의 법률안 제출

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
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
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
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
은 제외한다.

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
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그 밖에 농수산물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 . <단서 삭제>

2. 수산업자-----
-----.

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라. -----수산자조금의-----

-----수산물의-----
-----해양수산부령으로-----

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u>농수산물자조금</u> 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u>농수산업자의</u>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 <u>수산물자조금</u> ----- ----- ----- <u>수산업자의</u> ----- ----- -----.
4. “ <u>농수산물자조금</u> ”(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자조금단체가 <u>농수산물의</u>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u>농수산업자가</u>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4. - <u>수산물자조금</u> ----- ----- <u>수산물</u> <u>물의</u> ----- ----- --- <u>수산업자가</u> ----- ----- -----.
5. “의무거출금”이란 <u>농수산업자가</u>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5. ----- <u>수산업자가</u> ----- -----.
6. “임의거출금”이란 <u>농수산업자가</u>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6. ----- <u>수산업자가</u> ----- -----.
7. “ <u>의무농수산물자조금</u> ”이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7. - <u>의무수산물자조금</u> ----- ----- -----.
8. “ <u>임의농수산물자조금</u> ”이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8. - <u>임의수산물자조금</u> ----- ----- -----.
9. “의무자조금단체”란 <u>의무농수산물자조금</u> 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9. ----- <u>의무수산물자조금</u> -----.
10. “임의자조금단체”란 <u>임의농수산물자조금</u> 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10. ----- <u>임의수산물자조금</u> -----.
제3조(<u>농수산물자조금</u> 의 설치) ① 하나의 <u>농수산물</u> 품목에는 <u>의무농수산물자조</u>	제3조(<u>수산물자조금</u> 의 설치) ① ----- - <u>수산물</u> ----- <u>의무수산물자조</u>

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또는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여야 한다.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금-----

-----임의수산물자조금-----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해양수산부령으로-----

-----.

③ -----

-----해양수산부령으로-----

-----.

제4조(자조금의 용도) -----

-----.

1. 수산물의-----

2. 수산업자-----

3. 수산물의-----

4. 수산물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5. ~ 7. (생략)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자조금단

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업자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4.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 7. (현행과 같음)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
수산부령으로-----

-----수산업의
수산업자-----

1. ~ 3. (현행과 같음)

4. -----수산업자를-----

②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③ -----

-----해
양수산부령으로-----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

1. · 2. (생 략)

3. 농수산물의 유통 · 가공 · 수출 · 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생 략)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① 의무거출금은 농수산업자별로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급 · 수요의 과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1. · 2. (현행과 같음)

3. 수산물의-----
-----해양수산부령으로-----

4. (현행과 같음)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① -----수산업자별로-----
-----품목의-----

-----수산물의-----

-----해양수산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

② -----수산물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한다.

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총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
업자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 3. (생 략)

제10조(총회의 운영) ① 정기총회는 매
년 1회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생 략)

2. 재적 농수산업자의 4분의 1 이상
이 요구하는 경우

3. (생 략)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
청이 있는 경우

② 총회는 재적 농수산업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
업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은 재적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

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산물의 수산업자
로-----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
령으로-----.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총회의 운영) ① -----

-----.

1. (현행과 같음)

2. -----수산업자의-----

3. (현행과 같음)

4. -----해양수산부
장관의-----

② -----수산업자-----
-----수산
업자-----.

--수산업자-----
-----수산업자-----
-----.

③ -----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3. (생략)

4.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1
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12. (생략)

제12조(대의원회) ① 농수산업자의 수
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단
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
다.

② ~ ④ (생략)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
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
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
반수는 제1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수산업자 중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해양수산부령으로-----
-----.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
-----.

1. ~ 3. (현행과 같음)

4. -----해양수산부장관이-----

5. ~ 12. (현행과 같음)

제12조(대의원회) ① 수산업자의-----

-----해양수산부령으로-----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1. 수산업자-----

2.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u> 지명하는 <u>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u> <u>해양수산부장관이</u> 지명하는 해양 수산부 소속 공무원	2. <u>해양수산부장관이</u>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이</u> 지정하는 소비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 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4. <u>해양수산부장관이</u> ----- ----- ----- ----- -----
5. 의무자조금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수출·홍보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이</u> 지명하는 사람	5. ----- ----- ----- ----- ----- <u>해양수산부장관이</u> ----- -----
6. 그 밖에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u> <u>해양수산부령으로</u> 정하는 농수산 물 관련 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중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이</u> 지명하는 사람	6. ----- <u>해양수산부령으로</u> ----- ----- <u>수산물</u> ----- ----- ----- <u>해양수산부장관이</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농 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u> 정한다.	⑥ ----- ----- <u>해</u> ----- <u>양수산부령으로</u>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u>	⑦ ----- ----- ----- ----- ----- <u>해양수산부장관이</u> -----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①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은 재적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2. (생략)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③ (생략)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

-----.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① 수산업자-----
-----수산업자-----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1. 2. (현행과 같음)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

-----해양수산부장관의
-----.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

⑤ -----

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자금 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

-----해양수
산부장관의-----
-----.

⑥ -----해양수
산부령으로-----

-----.

⑦ -----
-----해양
수산부장관이-----
-----.

⑧ -----

-----해양수산부장관이-----
-----.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
-----수산물의-----수산
업자는-----

-----해양수
산부장관의-----

하는 영세 농수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농수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
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에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
원회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
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
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
한 납부일자 이내에 농수산업자의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
후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
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대상, 납
부금액,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
부에 관한 사항을 농수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방법 등 의무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

-----수산업자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산업자는-----

-----.

-----수산업자의-----

-----수산업자에게-----
-----.

④ -----

-----수산업자에게-----
-----.

⑤ -----

-----해양수산부령으로-----
-----.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
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① 의
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
다. 이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는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의 대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
이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의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
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③ (생 략)

④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이 수납
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거출금
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징수하
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거출금의 수납에 필

---수산업자에-----수
산물의-----

-----.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① -
-----해
양수산부장관이-----

--. -----

-----해양수산부령으로-----

-----.

② -----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산업자-----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산업자-----

-----.

⑤ (현행과 같음)

⑥ -----

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적 농수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농수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폐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해양수산부령으로-----
-----.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수산업자는-----

-----수산업자의-----

-----.

②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산업자의-----

-----.

⑤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생산액 등이 전국 생산량, 생산액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이거나 의무자조금단체가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무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경우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폐지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수산업자의-----수산물-----해양수산부령으로-----해양수산부령으로-----해양수산부령으로-----.

⑦ -----해양수산부장관이-----.

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⑧ (생 략)

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3. (생 략)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②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
-----수산물
-----수산업자-----

-----해양수산부장관의-----

1. 포획·채취-----

2. 3. (현행과 같음)

4. -----해양수산부장관이-----

② -----수산물의 수산업자는-----

③ -----
-----해양수산부령
-----으로-----.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자조금단체
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
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의자조금
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
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
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 (생략)
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
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
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생략)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위원
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
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농수산업자
로 한다.

1.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
하는 농수산업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
-----해
양수산부령으로-----

-----수산물의 수산업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
-----.

1. 2. (현행과 같음)
3. 수산물의-----
-----해양수산부
령으로-----

4. (현행과 같음)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수산
업자로-----.

1. -----
---수산업자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
수산부 소속 공무원

3. (생략)

② ~ ⑥ (생략)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생략)

②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 자
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임의자조
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
금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③ (생략)

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임의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 및 계약 등 임의자
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① 농수산
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수산
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의자조금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양수산부장관의-----
-----,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해
양수산부령으로-----

-----.

⑤ -----

-----해양수산부장관이-----
-----.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① 수산업
자는-----

-----수산물의-----수산
업자-----

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농수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28조의2(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
산업자-----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
-----수산물의 수산업자-----

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재배면적을 말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 및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수산업자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은-----

② -----

-----수산물의 수산업자-----

-----수

산물의 수산업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④ -----수산업자의-----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

-----수

산업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확
인한 과오납금은 농수산업자의 청구
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
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지 못한다.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의무자조
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
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
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
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
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
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수산업자의-----
-----해양수산
부령으로-----
-----.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수산물의-----

-----.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

-----해양수산
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

1. ~ 3.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평가의 절차 및 내용, 평가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시장에게 위임할

④ -----

-----해양수산부령으로-----
-----.

제32조(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해양수산부령으로-----
-----.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 있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u>해양수산부장관</u>은----- ----- ----- ----- ----- ----- ----- -----.
제37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u>농수산업자에게</u>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의2. ~ 7.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이 부과·징수한다.	제3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수산업자에게</u>----- ----- 4의2. ~ 7. (현행과 같음) ③ ----- ----- -----<u>해양수산부장관</u>이----- -----.

나.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입법배경 및 취지

☐ 자조금은 서구 사회에서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가 공동 활

동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자금의 일종으로, 크게 소비촉진, 수급조절, 제품개발, 수출 활성화 등 시장개척,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등 생산자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업 전반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²⁾.

- 농수산물자조금³⁾은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으로, 축산자조금⁴⁾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으로 정의되고 있음.

□ 국내의 자조금 제도는 1992년 양돈업계와 산란계를 시작으로 총 40여개의 품목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축산물의 경우 2002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자조금

2) 김윤이, 「민간주도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농·축·수산물 자조금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정책대학원, 2018.2.), p.30

3)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축산자조금(畜産自助金)”이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2012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자조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현행법은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자조금을 하나의 법률에서 함께 규율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관장하는 이원적(二元的) 체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농산물과 수산물은 생산 구조⁵⁾ 및 유통 구조⁶⁾가 상이하고, 자조금 조성 품목·거출방식 등에서도 차이가 있어,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는

5) 농산물은 재배면적·작형 조정을 통해 생산 이전 단계에서 공급량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반면, 수산물(특히 어획물)은 자원변동·수온·기상에 좌우되어 생산 불확실성이 본질적으로 큰 특징을 지님.

(참고) <주요 양식 품목별 생산동향(단위 : 톤, %)>(해양수산부 자료)

구 분	최근 5년 평균	2024년	2025년	전년 대비 증감률	최근 5년 평균 대비 증감률
김	580,300	551,651	717,880	30.1	23.7
미역	586,870	574,069	631,236	10.0	7.6
다시마	590,865	544,406	567,689	4.3	△3.9
굴	307,773	310,076	301,638	△2.7	△2.0
홍합	52,549	60,344	28,746	△52.4	△45.3
전복	24,056	23,491	27,376	16.5	13.8
넙치	41,913	40,125	41,821	4.2	△0.2
조피볼락	14,857	14,469	11,821	△18.3	△20.4

- 김은 신규 면허 개발, 기상 여건 호조, 수출 수요 증가 등으로 어가들의 생산 의지가 높아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1% 증가
- 홍합은 전년보다 생산량이 52.4% 감소하였는데, 작년 여름철 고수온 영향으로 대부분 어장에서 폐사 및 탈락 등으로 시설 철거가 늘고 작황 부진이 지속
- 조피볼락(우럭)은 생산량이 18.3% 감소하였는데, 주요 산지에서 여름철 고수온 영향은 적었으나, 이례적으로 적조로 품질이 떨어져 즉시 출하 가능한 물량이 줄면서 생산량이 감소

6) 건국대학교(2020.11.23.), 「수산물 유통분야 시장구조 분석」(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연구용역), p.48

- 생산자로부터 산지위판장(중도매인) 또는 산지수집상(유통업자)을 통해 공급된 물량은 소비지 도매 시장, 유사도매시장, 산지 활어전문 음식점 등으로 공급됨
- 실질적 도매단계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받는 주체는 유사도매시장으로 최소 80%에서 최대 85%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음
- 수산물 유사도매시장은 하남 미사리 시장, 인천 연안부두, 부산의 민락시장으로 제도권에포함된 시장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많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시장임
- 도매단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하는 소비지 도매시장은 양식(활어) 수산물의 5~10%만을 처리하고 있어 도매단계의 유통경로 중 가장 영향력이 미약함

데 따른 정합성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 축산·농산·수산물자조금의 제도적 특성 비교 〉

구분	축산자조금	농산자조금	수산물자조금
제도 생성	민간요구	정부압력	정부압력
담당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친환경농업과, 식량산업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도입 취지	생산자 단합	생산자 주도의 산업육성	민간 주도의 수산물 수급 조절 기능 강화(산업육성)
조성 방식	• 의무자조금(한우·한돈·우유·닭고기·계란·오리·육우) • 임의자조금(양봉·사슴)	• 의무자조금(인삼, 친환경 농산물, 백합) • 임의자조금(22개)	• 의무자조금(9개 품목) : 김, 광어, 전복, 송어, 민물장어, 향어, 메기, 관상어, 굴 • 임의자조금(2개 품목) : 미역, 새우
자조금 규모	• 대규모(한우·한돈·우유·닭고기·계란·오리·육우) • 중규모(양봉) • 소규모(사슴)	• 대규모(파프리카·감귤·친환경·농산물·인삼) • 중규모(토마토·포도·배·절화·백합) • 소규모(16개)	• 대규모(김, 광어, 전복) • 중규모(민물장어, 굴) • 소규모(송어, 향어, 메기, 관상어, 미역, 새우)
자조금 사용 용도	• 소비홍보(한우·한돈·우유·닭고기·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	• 소비홍보(17개) • 유통정보 제공(육묘) • 수출 활성화(백합)	• 수급안정 : 김, 광어, 송어, 전복, 굴 • 소비홍보 : 향어, 메기, 관상어, 새우 • 경쟁력제고 : 민물장어, 미역

자료 : 해양수산부

또한, 자조금단체의 법적지위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점에 따라서 수급조절 등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법적 정당성도 부족하다는 문제제기⁷⁾가 있었음.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 부문의 자조금단체를 특별법인으로 전환하고 수급관리 주체로서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농산자조금법안」”이라 함)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그에 따라 현행법에 남게 되는 수산 부문을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자조금법」”이라 함)로 재편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임.

7)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026.4.9.) 제안이유

— <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주요내용(제1조~제44조)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제4조(법인격) 자조금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 제6조(설립인가 등)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회원의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식품부장관의 인가
- ◆ 제15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① 자조금단체는 매년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 ◆ 제25조(자조금의 조성)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농산자조금만을 설치·운용·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하 시기에 따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급을 관리하여 품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지역 자조금을 설치
- ◆ 제27조(자조금의 재원) 자조금은 거출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지원금 등으로 조성
- ◆ 제34조(자조금회계의 구분) 회계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여 단체의 운영의 자율성 확대
⇒ 단체의 성격을 비영리법인에서 특수목적 법인의 영리법인으로 사업 등을 통한 수익창출

자료 : 해양수산부

개정안은 「농산자조금법안」의 제정을 전제로 분법(分法)하려는 입법으로, 하나의 법률에서 함께 규율되던 농산·수산 자조금을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여 소관을 명확히 하고 규율의 정합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서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을 「수산자조금법」으로 변경하고 수산자조금에 관한 규정으로 재정비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

다는 입장이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은 수산물자조금 제도개선 연구(2023년)⁸⁾ 등을 토대로 보완·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분법(分法) 전후 자조금 규율체계 〉

	현 행	변 경
법 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규율대상	농산물+ 수산물 자조금	-(농산) 농산물 자조금 -(수산) 수산물 자조금
소 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공동)	-(농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 해양수산부장관
단체지위	「민법」 상 비영리법인	-(농산) 이 법에 따른 특별법인으로 전환 -(수산) 현행 유지(「민법」 상 비영리법인)

비고 : 개정안(2218209)은 조문의 배열·번호 및 장·절 체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함

〈 참고자료 : 수산물자조금 현황(2026년 기준) 〉

(단위 : 백만원)

품목	회원수	사업규모 (전년 대비 증감)	자조금 조성방안	사용 용도별 비율
김	단체 3개소 (회원 2,347명)	1,820 (△820)	- 김생산어민연합회 : 김 양식면적 1m ² 당 2원(1ha 당 2만원) - 마른김생산자연협회 : 김 생산 속당 4원 - 김종자생산자연협회 : 종자 생산 상자당 10원	-소비홍보(6.3%) -수급안정(39%) -유통구조개선(3.3%) -경쟁력제고(27.9%) -교육및정보제공(1.6%) -운영비(21.9%)

8) 수산물자조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결과(‘23.7~11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토대로 개정방안을 검토중임

품목	회원수	사업규모 (전년 대비 증감)	자조금 조성방안	사용 용도별 비율
광어	단체 4개소 (회원 474명)	1,000 (300)	-수면적 m ² 당 400원	-소비홍보(23.6%) -수급안정(42.4%) -경쟁력제고(4.2%) -수출활성화(1.2%) -조사연구(0.6%) -운영관리(17.2%)
송어	회원 130명	400 (△100)	-송어사료(배합사료) 구매시 사료 1포 당 500원	-수급안정(28.8%) -소비홍보(26.5%) -경쟁력제고(15%) -교육및정보제공(12.8%) -운영관리(16.9%)
전복	단체 5개소 (회원3,582명)	2,094 (294)	- 양식면적 1m ² 당 30원 (1ha당 30만원)	-수급안정(31.1%) -소비홍보(14.2%) -유통구조개선(9.7%) -경쟁력제고(21.7%) -수출활성화(3.9%) -교육및정보제공(1.6%) -운영비(17.8%)
민물 장어	318명	624 (24)	- 민물장어 위판금액의 0.2%	-소비홍보(26.9%) -수급안정(13.1%) -유통구조개선(6.4%) -경쟁력제고(35.9%) -교육및정보제공2.6%) -운영비(15.1%)
항어	106명	300 (20)	- 양식면적 1m ² 당 130원	-소비홍보(39.2%) -수급안정(22.2%) -경쟁력제고(7.4%) -조사연구(5.0%) -운영비(26.2%)
메기	167명	440 (△160)	- 양식업자 양식면적 1m ² 당 150원 (최대200만원) - 치어 생산업자 미당 2원	-소비홍보(38.0%) -수급안정(33.0%) -교육및정보제공(4.0%) -운영비(25%)

품목	회원수	사업규모 (전년 대비 증감)	자조금 조성방안	사용 용도별 비율
관상어	309명	260	- 분과(양식·생산·수족관·유통)별 분담거출 - 일부 회비로 완충	- 소비홍보(28.8%) - 수급안정(10%) - 유통구조개선(5.4%) - 경쟁력제고(13.1%) - 교육정보제공(10%) - 수출활성화(2.7%) - 운영관리비(30%)
굴	1,098명	600	- 회비·자본금 일부 충당 - 위판수수료 0.3% - 가공수수료 1.5%	- 소비홍보(40%) - 수급안정(41%) - 유통구조개선(3.7%) - 교육정보제공(0.3%) - 운영관리비(15%)
미역	275명	200	- 작업조별 3백만원 거출	- 소비홍보(20%) - 유통구조개선(5%) - 경쟁력제고(40%) - 교육정보제공(5%) - 운영관리비(30%)
새우 (‘25년 기준)	200명	100	- 목표 거출금액을 회원별 배분	- 소비홍보(36.1%) - 유통구조개선(10.7%) - 경쟁력제고(25.0%) - 교육정보제공(10%) - 운영관리비(18.2%)

2)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안의 체계

□ 개정안은 현행법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규율대상을 수산 부문으로 한정함에 따른 용어·표현 및 소관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조문의 배열·번호와 장·절 체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실체적 규율내용의 변경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으나, 수산업을 규율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정의 규정과의 정합성의 제고한다는 점, 수산자조금 관련 위탁기관의 현실화 측면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주요 정비 항목 〉

	현행법	개정안
제명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규율대상 용어	농수산물/ 농수산업자/ 농수산물자조금	수산물/ 수산업자/ 수산자조금
소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위임입법(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령
정의 규정	제2조제1호 단서(축산물 제외)	단서 삭제(수산물로 한정)
의무거출금 산정기준(제8조)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	품목의 경영규모
생산신고 용어(제21조의2)	경작 및 출하 신고	포획·채취 및 출하 신고
위탁기관(제33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별도 규정 없음

나) 조문별 검토

- 개정안 제2조제1호는 ‘농수산물’을 ‘수산물’로 정의하면서 「축산자조금법」에 따른 축산물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2조제1호 단서를 삭제함.

현행법 단서는 농산물 정의와 관련하여 축산물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수산물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에서는 축산물 제외 단서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안 제8조제1항은 수산자조금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에서 ‘해당 품목의 경영규모’로 개정하여 산정기준의 예시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법의 ‘재배면적’은 농업에 관한 용어로서 수산업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는 있어 보이나, 예시를 모두 삭제하여 ‘경영규모’라는 포괄적 기준만 남길 경우 산정기준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

「농산자조금법안」 제29조⁹⁾가 거출금의 산정기준을 ‘재배면적이거나 출하액, 판매액 등 경영규모’로 예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어획량·양식생산량·판매액 등 수산업의 특성에 맞는

9)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29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판매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거출금의 규모를 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예시로 대체하여 산정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1조의2제1항제1호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항목 중 ‘경작 및 출하 신고’를 ‘포획·채취 및 출하신고’로 개정하여 생산 신고 대상을 수산업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그런데, 안 제2조제1호는 수산물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활동 및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정의하고 있어,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수산물도 규율대상에 포함됨.

‘포획·채취’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¹⁰⁾의 수단으로, 양식업활동에 의한 생산을 포함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으로 양식업활동을 함께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정의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제33조제2항¹¹⁾은 농수산물자조금과 관련된 업무의 위탁 규

1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나.~라. (생략)
 -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11)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정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농산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지정·관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을 통한 자조금 출연·지원 등 농산자조금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하고 수산자조금 관련 업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탁기관 규정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삭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조금 단체 사업 운영 지원 및 교육사업과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운영 등 수산자조금 지원 관련 주요 사업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위탁기관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단체의 법적성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고, 향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은 관련 연구¹²⁾ 등을 토대로 보완·개선하겠다는 계획임.

12) 수산물자조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결과('23.7~11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검토중임

〈 수산자조금 운영 · 관리 관련 위탁 사업 현황 〉

	자조금 단체 사업 운영 지원 및 역량강화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운영	자조금 단체 평가 지원
수행 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업 내용	- 자조금단체 계획 수립 컨설팅 및 연계사업 발굴·시행 지원 - 제도 확산 및 홍보 강화 - 자조금 집행 매뉴얼 배포 및 교육 - 품목별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설문 - 집행정산 및 회계검증 지원 - 자조금 단체 신규 설치 및 의무 자조금 전환 지원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안정화 사업 - 자조금 통계 관리 - 시스템 관련 통합 콜센터 운영	- 사업운용 및 성과 평가, 단체별 결과 보고서 작성 지원 - 운영실적 평가 지표 개선, 결과도출 및 환류 방안 마련

자료 : 해양수산부

다)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 필요

□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인하여 법률의 제명이나 조항 등이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등의 경우에 그 법률의 제명이나 조항을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으면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그 다른 법률의 자구 또는 인용 조항, 제명 등을 변경 내용에 맞추어 정리하고 있음¹³⁾.

□ 현행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제2항제1호¹⁴⁾와 「밀산업 육성법」 제10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4호¹⁵⁾ 등 다른 법령에서 인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이 법률 제명을 「수산자조금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종전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은 인용의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부칙에서 개정안에 따라 변경된 제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산자조금법안」은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¹⁶⁾을

13)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908

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 조성 지원 등 소비기반 조성

16)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부칙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② 「밀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제1호와 「밀산업 육성법」 제10조제4호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제명 변경 사항도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다른 법률의 자구 또는 인용 조항, 제명 등을 변경 내용에 맞추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농산자조금법안」과의 연계 및 시행일 조정

- 개정안은 「농산자조금법안」의결을 전제로 하는 연계입법으로, 하나의 법률을 두 개의 법률로 분리하는 분법 입법의 특성상 두 법률안은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함께 심사·의결하여 규율의 공백이나 중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농산자조금법안」은 모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시행일을 정하고 있으나, 두 법률의 공포 시점이 서로 다를 경우 시행일이 달라져 농산·수산 자조금 규율의 공백 또는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자조금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농산 부문의 분리와 수산 부문의 재편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두 법률안의 시행일이 일치하도록 부칙을 상호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10조제4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⁷⁾

17)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수산 · 농산 자조금 비교현황

구 분	수산자조금(해수부)	농산자조금(농식품부)
단체 법적성격	■ 민법상 비영리법인	■ 농산자조금법상 특수목적 법인
자조금 종류	■ (의무) 9개* / (임의) 2개** * 감전복·광어·메기·민물장어·송어·향어·관상어·굴 ** 미역·새우	■ 원예·농산물 자조금(1품목 1단체) * 의무(20개) : 백합·키위·배·파프리카·사과·감·굴· 콩나물·참외·포도·양파·마늘·복숭아·블루베리·밤 등 ** 임의(3개) : 버섯·논·콩·쌀
회원 범위	■ 어업인(양식업자, 관상어양식업자 등)	■ 당연회원(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특별회원 (정관에 정한자)
조직 및 운영체계	■ 생산자협회와 자조금단체 등	■ 이사회의 기능을 자조금관리위원회와 통합 으로 효율적 운영 ■ 대의원별 역할·직무 부여(하위법령)
지역자조금	■ 미도입	■ 도입(지자체 중심으로 강화된 조건으로 승인, 정부자금 일부 매칭 지원)
지자체 지원 (재원확대)	■ 없음	■ 지자체 지원금 ■ 지자체 위탁사업
정부지원율	■ 평균 매칭 : 70~80%(보정계수 적용 후)	■ 100~70%(상대평가 및 차등 지원)
무임승차 배제	■ 정부 지원사업 지원 제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지원 제한 확대
중장기 계획수립	■ 없음	■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연차별 이행 관리 (단체별 핵심 추진사업 발굴, 가중치 부여)
평가환류	■ 10억원이상 품목(2년마다 1회, 외부기관 위 탁)	■ 전체 품목(매년, 자체평가 후 전문가 평가)
통합 지원센터 주요 기능	■ 신규 자조금 설치 지원 ■ 운영 통합 매뉴얼 마련 ■ 콜센터 운영, 교육 홍보	■ 통합거출·회원관리·사업정산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 행정비용 절감 ■ 품목별 중장기 계획 이행 지원 ■ 통합홍보, 상담센터운영, 교육강화 ■ 특수법인 전환 및 신규 설치 지원

참고 2

수산물 자조금단체 운영·관리 주요 추진 현황

□ 운영·관리 개요

- 수산물 자조금 단체 운영·관리 한국어촌어항공단이 KMI와 공동
수급하여 용역으로 3년째 수행중('24~'26)
- 예산액: 445,454,540원(면세기관에 따라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 주요 사업 내용

① 자조금 단체 사업 운영 지원 및 역량강화(공단)

- 자조금단체 계획 수립 컨설팅 및 연계사업* 발굴·시행 지원
- * 각 품목단체-기업간 상생 프로그램 발굴(유통 판로 누적 확보량 30여톤) 등
- 제도 확산 및 홍보 강화
- 자조금 집행 매뉴얼 배포 및 교육
- 품목별 현장점검(e나라도움 부정징후 점검 등) 및 모니터링, 설문
- 집행정산 및 회계검증 지원
- 자조금 단체 신규 설치 및 의무자조금 전환 지원

②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운영(공단)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안정화('25년 구축 후 '26년 G클라우드 이관 완료)
- 자조금 통계 관리
- 시스템 관련 통합 콜센터 운영(외주 없이 공단자체 응대)

③ 자조금 단체 평가 지원(KMI)

- 사업운용 및 성과 평가, 단체별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 운영실적 평가 지표 개선, 결과도출 및 환류 방안 마련